

창녕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01호 2024. 5. 9.(목)

공 고

○ 창녕군 공고 제2024-830호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창녕군 공고 제2024-830호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창녕군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 등록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안 제2조)

4. 관련법규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 2) 팩스: 055-530-1750
- 3) 메일: booms00@korea.kr
- 4) 직접방문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55-530-1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창녕군에 소재하고, 창녕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530-1740)

【관 련 법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9. 2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 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